

보도시점

배포시점

배포 2024. 7. 23.(화) 11:00

과기정통부, 중고폰 거래 시장 신뢰 높인다

-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시행을 위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7.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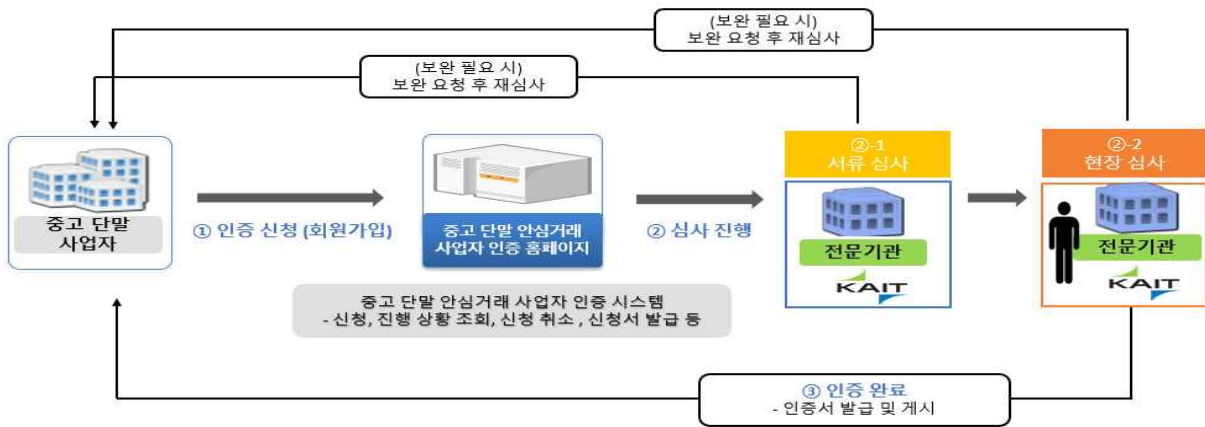
신뢰할 수 있는 중고폰 유통사업자에 대해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절차 등을 규정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등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그간 중고폰 시장에서 판매자는 나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삭제되는지 확인할 수 없어 불안하고, 구매자는 내가 구매하려는 중고폰이 적정 가격인지 불분명하여 불신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중고폰 판매자·구매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 정보를 알려주어 중고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번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등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중고폰의 품질 및 가격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관리체계 구축 △중고폰 성능확인서 발급 및 반품·환불 절차 마련 등을 인증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다. 인증기관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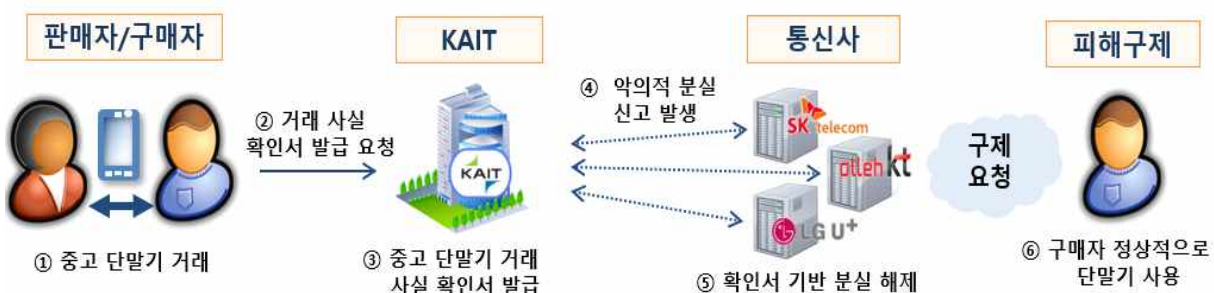
<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 운영 절차(안) >



한편,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는 전문기관이 판매자와 구매자 간 중고폰 거래 정보와 정상 거래 여부를 확인하여 증명서(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서비스로, 중고폰의 안전한 거래 체계를 마련하여 판매자·구매자 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면, 중고폰 거래 후 판매자가 악의적으로 분실·도난을 신고하는 경우 구매자는 해당 중고폰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나,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중고폰 구매자도 분실·도난 해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정상적인 중고폰 이용이 가능해진다.

<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운영 절차(안) >



과기정통부는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고시 제정, 가이드라인 마련,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등 준비 작업을 마무리한 후 연내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고가 휴대폰 구매에 부담을 느껴 중고폰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과 적정 가격에 대한 혼선 등으로 인해 중고폰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고 말하며,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비스가 중고폰 시장을 투명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여 중고폰 시장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	책임자	과 장	심주섭 (044-202-6650)
		담당자	사무관	신재우 (044-202-6657)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 개요

- 단말기 유통법 개정('24.1.30)으로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가 도입됨에 따라 인증기준·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 주요 내용**①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 마련** (안 제3조의2 신설)

- 인증기준*을 각호로 신설하고, 기타 세부사항은 고시로 위임

* 개인정보 보호방안 등 이용자 보호 요건을 갖추 것, 중고 단말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품질 및 가격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관리 체계를 갖추 것 등

② 인증제 신청 방법, 발급, 보완요청 등 (안 제3조의3 신설)

-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서, 인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 제출된 서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첨부서류가 미비 시 보완 요구

③ 인증제 유효기간 설정, 연장 및 절차 (안 제3조의4 신설)

-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만료 6개월 전에 연장 신청 등

④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안 제15조 제2항 개정)

- 과기정통부 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방통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업무 위탁

⑤ 규제재검토 설정 (안 제16조 제4항 신설)

- 과기정통부 장관은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재검토 조치

□ 개요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4.1.30)으로 중고 단말 거래사실 확인서비스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확인서 발급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 주요 내용**① 법령 표현 순화** (안 제40조의2 제1항 제5호 개정)

- 기존의 '통신단말장치'를 '통신단말장치(이하 "통신단말장치"라 한다)로 개정
※ 법제처에서 법조문 순화 및 약칭 관련하여 조항 정비 권고

② 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센터 업무에 중고 단말 거래 사실 확인서 발급 업무 추가 (안 제51조 제1항 개정 및 1의2호 신설)

- 기존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센터' 업무*에 중고 단말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업무를 추가

* 전문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 간 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의 효율적인 공유 업무 수행

** 통신단말장치의 거래 정보 확인을 위해 고유식별번호 공유가 전제되어야 함

③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게 분실·도난에 따른 통신 차단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안 제51조 제2항 제3호 신설)

-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요청한 경우에도 통신사업자가 통신서비스 사용 차단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④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요건 신설 (안 제51조 제5항)

- 과기정통부 장관이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요건* 신설

* (1호) 전자서명법 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확인, (2호) 해당 중고 단말이 신고·통보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을 확인

⑤ 확인서 발급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등 (안 제51조 제6항 및 7항)

- 과기정통부 장관이 전담기관* 지정, 수수료 근거 등 마련

* (1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혹은 (2호) 그밖에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